

시민기본소득: 한국과 브라질을 위한 좋은 제안*

에두아르도 수플리시**

시민기본소득(CBI, The Citizen's Basic Income)은 각 개인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정도로 충분해야 하며 마을, 지자체, 주, 국가, 나아가 언젠가는 대륙 또는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이에게 지급되어야만 한다. 누구나 그/그녀의 출신, 인종, 성, 나이, 시민으로서의 지위, 사회적 경제적 상태에 상관없이 마을, 지자체, 주, 국가, 대륙, 지구의 부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시민기본소득(CBI)을 지급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가? 더 많은 재원을 가진 사람이나 혹은 생계를 위해 굳이 이 돈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도, 또는 성공한 기업가나 예술가에게도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걸까? 그 이유는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시민기본소득을 받도록 더 많이 협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 이 글은 2010년 1월 18일 서강대에서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등이 공동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글로벌시대의 지속가능한 유토피아와 기본소득(Sustainable Utopia and Basic Income in Global Era)”에서 발표된 논문(“The Citizen's Basic Income: A Very nice proposal for Braxil and Korea”)이다.

** 저자인 에두아르도 수플리시(Eduardo Matarazzo Suplicy)는 PT(노동자당)-SP출신 상원의원이며, 미국 미시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Economics of Escola de Administracao de Empresas e de Economia de Sao Paulo 교수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브라질 시민기본소득(the Citizen's Basic Income) 관련 법 10.835/2004의 기초가 된 *The Bill of Law*가 있다. 현재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Co-Chair of 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시민기본소득의 이점은 무엇일까?

첫째, 시민기본소득개념은 브라질을 비롯해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소득이전제도보다 훨씬 쉽게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Bolsa Familia(보사 파밀리아) 제도를 설명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를 한 번 보자. 브라질의 Bolsa Familia 제도는 2003년 10월 도입되었으며, 2009년 9월부터 실효성 검토에 들어간 프로그램이다.

브라질에서 월 1인당 가구소득이 140헤알 미만인 가구는 이 제도를 통해 수당을 지급받는다. 월 1인당 가구소득이 70헤알 미만인 가구라면 월 68헤알을 받는다(12월 17일 현재 미화 1달러는 1.77헤알이다). 또 수급 가구에 16세 이하의 자녀가 한 명, 두 명, 세 명이 있을 경우 각각 22헤알, 44헤알, 66헤알을 받는다. 16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이 있을 경우, 최대 두 명까지는 33헤알을 받게 된다. 따라서 Bolsa Familia 프로그램을 통해 한 가구당 지급되는 금액은 매월 최소 22헤알, 최대 200헤알이다. 브라질 평균 가족규모는 3.5명이지만, Bolsa Familia 프로그램 참여 가구들은 가족 규모가 이보다 조금 더 큰 편이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수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임신한 경우 산모는 반드시 공중보건 네트워크 — 보건소 또는 지자체 병원 — 에 가서 검진을 받고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 받아야 한다.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는 보건부 일정에 따라 자녀들의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7세에서 16세의 사이 자녀들은 반드시 학교를 다녀야 하며, 출석률은 85%를 넘겨야 한다. 16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들도 학교를 다녀야 하고, 출석률은 75%를 넘겨야 한다.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민기본소득을 시행할 것이고, 금액은 Bolsa Familia 프로그램을 통해 지급하는 것보다 근소하지만 조금 더 많다고 가정해보자. 정부는 이렇게 공표할 것이다.

내년 1월 이후 5년 이상 거주 외국인을 포함해 브라질 내 모든 거주민들은 사회, 경제적 조건에 상관없이 매월 40헤알을 받게 될 것이다. 6인 가구는 총 240헤알을 받게 된다. 국가의 상황이 나아지면 수령액이 늘어나 곧 100헤알, 언젠가는 500헤알로 늘어가게 된다. 자격조건 미달로 기본소득을 못 받는 사람은 없다. 어떤 조건도 없다.

이게 훨씬 이해하기 쉽지 않는가?

그렇다면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는 데 있어 또다른 이점은 뭔가?

첫째, 공식 혹은 비공식 부분에서 각 개인 소득을 파악하는데서 발생하는 모든 관료주의를 청산할 수 있다. 노동자, 공무원,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에서부터 길에서 차를 손보거나, 사람들이 일을 나가거나 장을 보러가거나 노점상을 하고 있는 동안 이웃의 빨래를 해주거나 혹은 아이를 돌보는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이른바 등록되지 않는 수입 등을 파악하는 데 관료주의가 개입된다.

또한 ‘나는 **요 정도 밖에** 못 번다. 생존을 위해서는 보둑 보전이 필요하다’는 식의 낙인이나 부끄러움을 굳이 드러낼 필요도 없다. 아울러 **일정한 수준 이상** 소득이 없어야만 소득보전을 받을 수 있을 때 나타나는 의존 현상도 없앨 수 있다. 만약 일을 다시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자. 일을 시작하면 일정 금액을 벌 수 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정부 프로그램에서 배제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취직을 하지 않고 실업상태를 유지하거나 빈곤함정에 빠지게 될 수 있다. 그런데 가족 구성원 모두가 시민기본소득을 받는다면, 어떤 일자리건 추가소득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상황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가 항상 있게 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민기본소득의 이점은 모두의 존엄성과 자유의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데 있다. 우리는 위대한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의 생각대로 발전(development)을 통해 이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자유의 수준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생계를 위해 자신의 몸을 파는 것 외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한 소녀를 생각해보자. 아니면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밀거래에 나선 젊은이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또는 노예 수준의 일자리밖에 얻을 수 없는 시골 노동자를 생각해보자. 만약 시민기본소득이 이들과 이들의 가족 전체에 지급되면, 분명 이런 선택을 거부하고 자신의 능력에 맞는 기회가 올 때까지 잠시 기다릴 수도 있다. 또는 전문적인 훈련 과정을 밟아 더 나은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여러분들 중 일부는 기본소득이 게으름을 부추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부랑아 기질을 다분히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부랑아 기질을 가지고 있을까? 잠깐 생각해보자.

우리 인간은 많은 것들을 하길 좋아한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활동, 심지어 결국에는 시장을 통해 팔아서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될 지라도 여러 다양한 활동에 대해

의무감을 느낀다. 예를 들어 어머니는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젖을 먹인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가 영양분을 잘 섭취하고, 다치지 않고 잘 성장하도록 돌볼 때도, 우리의 부모나 조부모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도, 그리고 지역 사회, 교회, 학술 집단 등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에도 책임감을 느낀다. 왜냐하면 그 활동이 공동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호)나 아마데오 모딜리아니(Amedeo Modigliani) 같은 위대한 화가들은 그림을 그리면서 생존을 위해서 작품을 팔러 거리로 나섰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이 두 화가들은 모두 병들어 일찍 죽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들의 작품은 수백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

게다가 우리 헌법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한다. 즉 공장, 농장, 호텔, 식당, 은행, 부동산, 금융 채권 소유자들은 자산수익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수익, 임대료, 이자와 같은 것들이다. 브라질과 한국법이 자산수익을 얻기 위해서 자산 소유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이들은 보통 일을 하고 있으며 많은 수가 자발적인 활동에 그들의 시간을 쏟고 있다. 이들의 자녀가 학교에 출석하고 있는지를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런데도 이들의 자녀는 주로 최고의 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렇듯 우리보다 더 많은 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수익을 얻을 권리를 보장해 주기로 한다면, 이를 모두에게 확장시켜서 가난한 자든 부자든 간에 모두에게 국가의 부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브라질인으로서의 권리로서 부여하는 것은 어떤가? 브라질 역사의 한 측면을 살펴보자.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브라질인은 300년이 넘도록 브라질에서 노예로 살며 많은 가족들의 자본축적을 도왔다. 혹은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신은 아마 브라질 사람일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신은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가 대서양 심해의 암염하층(pre-salt layer)에서 석유 자원을 찾도록 도와주기도 했었다. 그러니 모든 브라질인이 국가의 부에 참여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그럭저럭 작은 소득이나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두가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을 시민의 권리로 만든다면, 이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것인가?

그렇다. 이건 좋은 제안이다. 이 제안의 기저에는 인류 역사에 대한 오랫동안의 통찰이 깔려 있다. 또 모든 종교 및 방대한 스펙트럼의 위대한 철학자, 경제학자,

사상가들에서도 이런 생각은 나타난다.

오늘 집을 나서면서 여러분은 창문을 지나쳐 나왔는가 아니면 또 다른 길을 통해서 나왔는가? 문을 통해서 나왔다고? 공자는 기원전 520년에 “가난보다도 훨씬 나쁜 것은 불확실성”이라며 “그 누가 집을 나설 때 문 말고 다른 곳을 통해 나올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절대 빈곤을 퇴치하고,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존엄성과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집을 나설 때 문으로 나오는 것만큼 쉬운 해답이 바로 시민기본소득 제도화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기원전 300년에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Politics)에서 정치는 모두에게 공정한 삶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과학 — 즉 공공재(the common good)라고 가르쳤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인 정의(political justice)가 필요하고, 정치적 정의는 반드시 법에 의해서 불평등으로부터 평등성을 창출하는 분배정의(distributive justies)에 의해 선행되어야한다.

구약성서에 513번 등장한 바 있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히브리어는 무엇인가? ‘체다카(Tzedaka)’다. ‘Tzedaka’는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 혹은 사회 안에서의 정의(justice in society)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오랜 위대한 염원이었으며 또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염원이기도 했다.

신약성서 사도행전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모든 재산을 한데 모으고 서로 연대해 살면서 그/그녀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포도밭 주인’과 같은 예수의 비유에서도 우리는 이와 유사한 원칙을 찾을 수 있다. 하루는 예수가 몇몇 일꾼을 고용했다. 포도밭 주인과 일꾼들은 양쪽이 정당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합의를 했다. 여행이 끝나자 예수는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똑 같이 품삯을 내주었다. 결국 가장 먼저 온 일꾼에게 이르자 맨 먼저 온 이 일꾼이 불평을 했다. 어찌 맨 나중에 온 일꾼과 똑같은 품삯을 주느냐며 자신은 일을 더 많이 했다고 불평했다. 그러자 이 포도밭 주인은 대답한다. 우리가 공정하다고 합의한 대로 지금 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가, 맨 나중에 온 사람도 그 가족을 먹여 살리는 데 필요한 만큼을 받을 권리가 있다.

사도 바울은 고린토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매일 예수의 모범을 따르라고 했다. 예수는 전지전능했으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로 했고 그들 속에서 살았다. 거기에 적혀 있는 그대로 그는 더 많은 정의와 평등을 설교했다. 그는 “많

이 가진 자들은 남은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가지지 않은 자들은 부족함이 없으리라”라고 말했다.

마호메트와 코란, 이슬람교를 따르는 이들도 이런 측면에서는 유사한 원칙을 갖고 있다. 하디스(마호메트의 언행록)에서 2대 칼리파 오마르는 거대한 부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를 떼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의 달라이 라마도 《새천년을 위한 윤리》(*Ethics for the New Millenium*)에서 우리가 만약 가장 부유한 자들의 사치스러운 소비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보다 먼저 전인류의 생존을 보증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를 좀 더 따라가면, 16세기 초 위대한 인문주의자인 토마스 모어(Thoma More)의 가르침에서도 이런 생각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1516년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Utopia*)라는 훌륭한 책을 썼다. 유토피아는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곳에 대한 이야기다. 여기에는 사형제도에 대한 대화가 나오는데, 잉글랜드가 사형제도를 도입한 후에도 폭력범죄를 줄이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책에 나온 인물은 처음에 도둑이 되었다가 나중에 송장이 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사람들에게 끔찍한 형벌을 가하는 것보다 모든 사람들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평가에 기초해 토마스 모어의 친구인 후안 비베스(Juan Luis Vives)는 플랑드르 시티 브뤼헤(the Flemish city Bruges)의 시장에게 빈민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약에 대한 글을 보낸다. 여기서 후안 비베스는 최초로 최소소득(minimum income)보장 구상을 내놓았다.

2세기가 지난 후 프랑스와 미국 혁명의 위대한 이론가중 한 명으로 꼽히는 토마스 페인(Thomas Paine)은 1795년 프랑스 국민의회에서 《토지분배의 정의》(*Agrarian Justice*)라는 저술을 통해 빈곤이 문명과 사유재산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독립 이전에 미국에서 살았던 토마스 페인은 유럽 마을, 도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도 박탈과 빈곤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토마스 페인은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이 경작의 결과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상식을 받아들였다. 토마스 페인은 이 이익의 일부를 떼어 모두에게 속하는 기금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금은 일단 축적된 후에 이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모두에게 기본 자본 및 소득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이 기금을 내놓는 것은 자선이 아니라 다만 사유재산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빼앗긴 국가의 부에 참여할 수 있는 모두의 권리라고 말했다. 토마스 페인을 이와 같은 내용을 모든 국가들에 제안했다.

또 다른 영국인인 초등학교 교사 토마스 스펜스는 《아동의 권리》(*The Rights of Infants*)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팸플릿에서 각 시는 건물과 부동산의 유지, 그리고 중앙 정부에 내는 세금 등을 포함한 모든 공공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경매를 하라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모든 거주자들이 이익을 평등하게 분배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1848년 조셉 샤를리에(Joseph Charlier)는 《사회문제의 해법》(*Solution du probleme social*)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모든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의 섭리에 따라 창조된 천연 자원의 사용권(usufruct)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썼다. 영국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 그의 저서인 《정치경제학의 원리》(*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에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여부를 떠나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썼다.

20세기 여러 다양한 경향의 철학자 및 경제학자는 여러 이데올로기 및 구상들을 검토한 후 공통의 의견에 이르렀는데, 버트란드 러셀(Bertrand Russel)의 1918년 《자유로 이르는 길: 사회주의, 아나키즘, 생디칼리즘》(*Roads to Freedom: Socialism, Anarchism, and Syndicalism*)에서도 이런 생각이 잘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지지하고 있는 구상은 핵심적으로는 이런 것들이다. 일을 하느냐 여부를 떠나 작은 금액의 소득이라도 생존에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는 소득이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생산된 상품의 총량에 의해 보장될 수 있는 그 이상의 소득은 공동체가 유용하다고 인정하는 일을 하는 데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1920년 《국가보너스 제도》(*Scheme for a State Bonus*)에서 데니스와 마벨 밀너(the couple Dennis e Mabel Milner)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모든 개인은 항상 중앙 기금에서 소량의 돈을 받아만 한다. 그리고 이 돈은 삶과 자유를 유지하는 데 충분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능력에 따른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일종의 소득을 가지는 방식으로 중

양기금의 일부를 받아야 한다.

1937년 위대한 경제학자인 조안 로빈슨(Joan Robinson)은 《완전고용이론 서론》(*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Full Employment*)에서 모두에게 토요일이 되면 1파운드를 나누어 줄 것을 제안했다. 그녀와 함께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연구를 진행했으며 존 케인스(John Keynes)와도 알고 지냈던 제임스 미드(James Edward Meade)는 1997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인물이다. 제임스 미드 역시 시민기본 소득을 옹호한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미드는 1935년 《노동자정부의 경제정책 안내서》(*A Guide of Economic Policy for a Worker Government*) 저술에 공을 기울이면서 자신의 생각을 더욱 성숙시켜서 《아가토포피아에 대한 3부작》(*Agathotopia*, 1989, 1992, 1995년)으로 자신의 아름다운 주장을 발전시켜 나갔다.

미드는 이러한 자신의 긴 여정을 유토피아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주 오랜 기간 유토피아를 찾기 위한 여정을 했지만 하지만 그는 결국 유토피아를 찾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그는 아가토포피아를 만나게 됐다. 그의 친구가 된 한 경제학자는 아가토포피안(Agathotopian)들이 유토피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다고 말해 주었을 뿐 유토피아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아가토포피안들은 완벽한 곳에 살고 있는 완벽한 인간인 유토피안(Utopian)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아가토포피안들은 어리석음과 배반을 범하기도 하는 불완전한 인간존재이지만 그래도 마침내 살기 좋은 곳을 건설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이 다르다.

미드는 아가토포피아에서 자유의 여러 목표들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 및 사회적 장치(social arrangements)를 만들 수 있다고 봤다: 각자가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으며 바라는 만큼의 재화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자유, 소득과 부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평등, 자원과 기술을 통해 가능한 최고의 삶의 패턴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획득할 수도 있다고 봤다.

그렇다면 어떤 장치(the arrangements)를 의미하는가? 자원 배분에 있어서 효율성에 도달할 수 있는 가격과 임금에 있어서의 유연성, 기업가와 노동자들이 임금을 위해서만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결과(output)에 대한 참여를 위해서도 고용된

다는 의미에서 기업가와 노동자들 사이의 연관형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나 소득보장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의 사회 배당금(social dividend)이다. 미드는 단계적으로, 그러나 강력한 단계를 통해서 이런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인 존 케인즈는 1939년 《더 타임스》(*The times*)에 발표한 《전쟁비용을 조달하는 방법》(*How to pay for the war*)에서 자신의 동포들에게 방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GNP의 2%를 떼서, 50억 파운드 중 1억 파운드를 이용해 모두가 기본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확신시키려고 했다.

오스카 랑에(Oscar Lange)와 함께 1994년 《시장 사회주의 경제이론에 대하여》(*On the Economic Theory of Market Socialism*)라는 저술작업을 함께 한 아바 러너(Abba Lerner)는 《통제 경제학: 복지 경제학의 원리》(*The Economics: Principles of Welfare Economics*)를 발표했다. 이 저작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 고정된 금액을 부정적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로서 부여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구상을 담고 있었다.

또 다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시장 경제의 옹호자였던 경제학자들도 생존에 필요한 수단을 결여한 사람에 대한 최소소득보장(the guaranteed minimum income)을 주장한 바 있다. 즉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는 《예속로의 길》(*the Road to Serfdom*)에서, 조지 스티글러(George Stigler)는 1946년 《미국 경제리뷰》(*American Economic Review* 36)에 발표한 《최저임금 법제화의 경제학》에서 만약 우리가 절대 빈곤을 퇴치하고 고용을 증진시키고자 한다면, 최저임금보다는 부정적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제도화해서 기존 소득으로 생존에 필요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최소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주장은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의 1992년 저서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에서 매우 쉽게 풀어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중화되었다. 제임스 토빈(James Tobin)도 1960, 70년대 최소소득보장을 연구하고 옹호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토빈은 케인즈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리드만과 많은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1972년 노벨상 수상자인 토빈은 민주당 후보인 조지 맥 거번(Gerge Mc Govern)이 모든 미국인들에게 연간 미화 1000달러를 지급하는 시민보조금을 주장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것은 정확히 기본 소

득의 개념과 일치한다.

그리고 제임스 토빈, 폴 사무엘슨(Paul Samuelson), 존 케네드 갤브레이스(John K. Galbraith), 로버트 램프만(Robert Lampman), 해롤드 와츠(Harold Watts)와 1200명의 경제학자는 1968년 미 의회에 보조 내지 보장 소득을 채택하라는 성명을 미 의회에 보냈다. 1969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존 케네디 정부 및 린든 존슨 정부시절 사회 프로그램을 계획했던 다니엘 패트릭 모이니한(Daniel Patrick Moynihan)에게 부정적 소득세를 통해 최소소득보장을 제도화하라고 요청했다. 이 제안은 하원에서 통과되었으나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최소소득 보장을 옹호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인물은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이었다. 우리는 마틴 루터 킹의 주장을 1997년 저작 《어디로 갈 것인가: 혼돈인가 공동체인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저작에서 마틴 루터 킹은 “나는 가장 단순한 접근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있다. 빈곤의 해결책은 현재 폭넓게 논의되고 있는 보장소득을 통해서 직접 퇴치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5년 내가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나는 전 상원의원인 맥 거번을 방문했다. 맥 거번은 1972년 대선에서 리처드 닉슨에게 패했는데, 내가 그에게 브라질리 시민기 본소득을 승인했으며 이것은 그가 1972년 주장했던 것과 유사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사람들이 내가 시대에 앞선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 내게 말했다.

1974년 미 의회는 부분적인 부정적 소득세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일을 하고 있으나 일정 소득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근로장려 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발전이었다. 오늘날 2천3백만 가구가 이 제도를 통해 한 해 평균 2,000달러 이상의 소득 보전을 받고 있다. 이 제도에 어린이부양가구지원프로그램(AFDC, Aid for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이 추가 되었다. 이 제도는 1996년 빈곤가구한시지원프로그램(TANE,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Program), 실업자 보장, 푸드 쿠폰, 사회보장 한시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대체되었다.

한편 지난 10년 동안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도 소득 보장 및 이전 제도 등을 입안했다. 프랑스에서는 개입최소소득(the Minimum Income of Insertion)이, 포르투갈에서는 통상적인 방식인 자녀수당방식으로 최소가족소득(Minimum Familiar

Income)이 도입되었다. 남미 국가들 사이에서도 조건부 소득이전 제도가 확산되었다. 멕시코에서는 오폴투니다데스(Oportunidades)가, 칠레에서는 칠레솔리다리오(Chile Solidario)가, 아르헨티나에서는 제프스 앤 제프스 델 호가르(Jefes and Jefes Del Hogar)와 최근에는 아지그나시온 파밀리아르(Asignacion Familiar)가, 코스타리카에서는 아반세모스(Avancemos)가, 우루과이에서는 잉그레소 치우다다노(Ingreso Ciudadano)가 각각 도입되었다.

1986년 벨기에 루뱅에서 일군의 사회학자, 경제학자 철학자들이 기본소득유럽 네트워크(BEIN, Basic Income European Network)를 결성했다. 여기에는 필리페 판 빠레이스(Philippe Van Parijs), 가이 스탠딩(Guy Standing), 클라우스 오페(Claus Offe), 로버트 판 더 빈(Robert van der Veen) 등이 참여했다. BIEN은 여러 국가에서 소득이전의 형태에 대한 포럼을 만들고 모든 국가에서 무조건적 기본소득(Unconditional Basic Income)을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BIEN은 매 2년 마다 국제대회를 열고 있다. 2004년 대회는 바르셀로나에서 열렸는데 5개 국가의 연구자들이 참여해 BIEN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12차 BIEN 국제대회는 2008년 6월 더블린에서 열렸는데 이 때 우리 브라질인들에게 차기 13차 국제대회를 브라질에서 개최 할 것인지를 물었다. 그래서 차기 국제대회는 2010년 6월 30일, 7월 1일, 2일 상파울로(the Faculdade de Economia, Administracao e Contabilidade da Universidade de Sao Paulo, FEA-USP)에서 열기로 했다. 또한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은 이 행사에서 개막연설을 하기로 수락했다.

1960년대 초에 한 어촌 마을의 촌장은 어업으로부터 막대한 부가 창출되었으나 주민들이 여전히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주민들에게 어업에서 나온 부의 3%를 세금으로 걷어 모두에게 속하는 기금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곧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 다른 세금? 나는 반대한다”는 이야기였다.

주민을 설득하기까지 5년이 걸렸다. 일단 제도화되면서 그 제도는 매우 성공적으로 안착한다. 그는 곧 알래스카의 주지사가 되었고, 알래스카에서는 60년대 후반 석유 자원이 발견됐다. 1976년 바로 그 제이 하몬드(Jay Hammond) 주지사는 30만 명의 시민에게 “우리는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한다.

석유는 다른 천연자원과 마찬가지로 재생불가능하다. 그러나 천연자원에서 나오는 유전채굴권 수입의 일부를 떼어 알래스카 모든 주민들에게 속하는 기금으로 만들자”고 설득했다. 7만 6천 명이 찬성했고 3만 8천 명이 반대했다. 즉 찬반 비율은 2:1 이었다. 이 제안은 통과되었다. 법안은 천연자원 채굴에서 나오는 이익 중 25%를 떼내어 미국 국채, 알래스카 기업 주식 등에 투자했고, 이 기금을 통해 경제의 다각화가 이뤄졌다. 미국 기업과 페트로브라스, 발레 도 리오 도체(Vale do Rio Doce), 이타우(Itau), 브라데스코(Bradesco) 등 이익이 남는 30여 개 브라질 기업 등 해외 기업의 주식 등에도 투자했다. 이는 브라질인도 이 제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알래스카 영구펀드(Alaska Permanent Fund)의 가치는 80년대 초 미화 10억 달러에서 최근에는 미화 40억 달러로 증가했다. 알래스카 영구펀드의 가치는 2009년 경제 위기로 하락했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알래스카에서는 1년 이상을 거주한 개인은 1월 10일에서 3월 31일 사이에 1장 분량의 양식에 직업과 주소, 1년 이상 거주했는지 여부, 이동을 했는지 여부, 18세까지의 가족이 있는지를 기입하게 되어 있다. 소득 또는 재산 정도는 필요하지 않으며, 제출한 정보를 입증할 수 있는 2명만이 필요하다. 80년대 초반까지는 매년 10월이 초가 되기 전에 전자 거래(electronic transfer)를 통해 통장으로 입금을 받거나 수표가 집으로 배달되었다. 처음에는 미화 300백 달러가 지급되었으나, 조금씩 증가해 2008년에는 1인당 2,069달러가 되었다. 2009년에는 1,305달러로 떨어졌는데 이것은 경제에 닥친 경제위기와 석유 및 뉴욕증권거래소의 주가 하락 때문이었다.

이 펀드를 통해 지난 26년간 GDP의 약 6퍼센트를 분배했고, 알래스카 주민은 현재 약 70만 명인데, 2008년 61만 1천 명이 서류를 제출했다. 알래스카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평등한 주가 되었다. 1989~99년 동안 미국 상위 20%의 1인당 가족 소득은 26% 상승했으나 하위 20%의 1인당 가족소득은 12% 하락했다. 모든 거주자들에게 동등하게 지급된 배당금(dividend) 덕분에 알래스카의 상위 20% 가구의 1인당 소득 증가율은 7%였지만, 하위 20% 가구의 1인당 소득 증가율은 28%를 기록할 수 있었다. 즉 하위 20%의 가구 소득은 상위 20%에 비해서 4배 증가했다. 더 공정한 사회에 도달하기 위한 목표를 향한 이 실험은 매우 성공적이다.

예일대 교수인 브루스 액커만(Bruce Ackerman), 앤 앨스토틀(Ann Alstott)은 1999년 《주주사회》(Stakeholder Society)를 출간했다. 이들은 토마스 페인의 제안에 기초

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21세가 되면 8만 달러를 지급받아 공부를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등 뭐든 이들이 원하는 것에 쓸 수 있는 가능성을 주어 성년을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페이비언 협회(Fabian Society) 소속인 한 졸업생은 개인적인 친구였던 토니 블레어의 제1장관에게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블레어는 그의 부인인 셰리 블레어가 넷째 아들인 알렉산더를 임신하고 있을 당시, 이 시점부터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6세, 11세 그리고 16세가 될 때 각각 250, 50, 50 파운드를 각각 받을 수 있는 은행 예금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예금에는 이자가 붙을 것이고, 18세가 되면 예금은 4천 파운드에서 5천 파운드까지 늘어나 국가의 부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어린이신탁펀드(Child Fund Trust)라는 이름을 가진 이 펀드는 2003년 5월 13일 영국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따라서 1975년에 토마스 페인이 제안했던 이 제안이 출생에서부터 근소한 금액이나마 적용이 된 것이다.

브라질에서 시민기본소득은 공동체 내 선주민의 삶에 의해 옹호돼 왔던 가치, 투쟁하고 있는 퀴롬보라스(quilombolas) 및 노예 폐지론자들, 그리고 더 공정한 국가로 브라질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연구자 및 과학자들이 주장해왔던 가치와 일치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카이오 프라도(Caio Prado Junior), 밀턴 산토스(Minton Santos), 조슈에 지 카스트로(Josue de Castro), 셀소 푸르타도(Celso Furtado)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조슈에 지 카스트로는 PTB 출신으로 1956년 하원의원(federal deputy)에 당선된 후 하원(Chamber of Deputies)에서 소득 불평등에 대한 연설한 바 있다. 그는 《배고픈 지리학》(*Geografia da Foem*), 《배고픈 지정학》(*Geopolitica da Fome*)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각자에게 최소소득을 줄 필요성을 옹호한다. 이는 브라 인들이 생존을 위한 최소소득을 가질 권리에 입각한 것이다.

미국의 미시간 대학 경제학 박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던 1966~68년 나는 우연히 부정적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통한 소득보장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다. 나는 미시간 대학 박사과정 도중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15개월간 공부를 하면서 이 개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그 이후 나는 브라질로 돌아와서 1975년 레

비스타 브라질레이라 에코노미아(Revista Brasileira de Economia)에서 연구하고 있는 안토니오 마리아 다 실베이라(Antonio Maria da Silveira)교수와 의견을 교환했고, 브라질에서도 부정적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통화소득재분배”(Moeda e redistribucao de renda)의 조항으로 법제화 할 것을 제안했다. 1990년 노동당(PT-SP)의 상원의원(senator)에 처음 당선이 되었을 때 나는 안토니오 마리아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최소소득보장계획(PGRM)을 발의할 것을 제안했다. 매 월 4만천 크루제이로스(cruzeiros) 이하 소득을 가진 25세 이상 성인에게 그 사람의 소득과 특정 수준(그 당시에는 매월 미화 150불) 간의 차이분에 대해 30%에서 50%까지 보조금을 받을 권리를 행정부 명령(the Executive Power)으로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이 사업은 연방 의회에서 모든 정당의 만장일치로 1991년 12월 16일 통과되었다. 그리고 이 법안은 하원에 제출되었고 재정경제위원회의 게르마노 르고토(민주운동당-RS) 하원의원으로부터 열정적인 서면의견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이 구상에 대한 논쟁이 브라질에서 불붙었다. 1991년 노동당(PT)과 친화력이 있는 50여 명의 경제학자들 사이의 토론이 벨로 호리존테(Belo Horizonte)에서 열렸고 여기에는 월터 바렐리(Walter Barelli), 안토니오 마리아 다 실베리아가 초청됐다. 여기서 나는 최소소득보장계획(PGRM)에 대한 구상을 내놓았다. PUC-리우 데 자네이로의에서 온 호세 마르시오 카마르고(Jose Marcio Camargo) 교수는 최소소득보장은 좋지만 빈곤가구에 한정에서 취학아동이 있는 경우에 지급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래야 어린이들이 생계를 돕기 위해 강제로 일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1991년 12월 3일과 1993년 3월 10일 《폴하》(Folha)라는 신문에 이 주제를 다룬 두 개의 글을 기고했다. 80년대 후반 브라질대(Universidade de Brasilia)의 크리스토밤 부아르케(Cristovam Buarque) 교수도 유사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1995년 이런 논쟁을 염두에 두고서 캄피나스(Campinas)시의 호세 로베르토 마갈해스 테이세이라(Jose Roberto Magalhaes Teiseira, PSDB) 시장과 지스뜨리또 페데랄(Distrito Federal) 주의 크리스토밤 부아르케(Christovam Buaque, PT) 주지사가 ‘볼사 에스콜라(Bolsa Escola)’ 프로그램을 구상을 내놓았다. 볼사 에스콜라는 교육의 기회를 연계시킨 제도다. 캄피나스시에서는 가구 1인당 소득이 최저임금인 70 헤알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 소득이 70헤알이 되도록 소득을 지원

해주었고, 지스프리로 페데랄 주에서는 가구 1인당 소득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전체에게 지원됐다. 이런 경험이 리베이라오 프레토(Ribeirao Preto), 피라치카바(Piracicaba), 훈디알(Jundial), 상 호세 도스 캄포스(Sao Jose dos Campos), 벨로 호리존테(Belo Horizonte), 벨렘(Belem), 문도 노보(Mundo Novo) 등의 지역으로 확산됐다. 의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제출됐고, 지자체들은 연방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를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1996년 나는 시민기본소득을 옹호해온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필리페 판 빠레이스 교수, 페르난두 엔리케 카르도수(Fernando Henrique Cardoso) 대통령, 파울로 레나토 소우자(Paulo Renato Souza) 교육부 장관, 이 제도를 지지하는 넬슨 마르체잔(Nelson Marchezan) 대표를 만났다. 판 빠레이스 교수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당연히 더 나은 목표로 설정되어야 하지만, 우선 최소소득보장을 교육기회와 연결시키는 것은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인적 자원 투자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카르도수 대통령은 1997년 의회에 9,533호 법안을 승인하도록 의회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 이 법은 연방정부가 사회적 교육적 행동계획을 위한 최소소득제도를 도입하는 지자체 비용의 50%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2001년 의회를 통과했고, 카르도수 대통령은 새 법 10219/2001호를 승인했다. 연방정부가 브라질 지자체가 교육 기회와 연관된 최소소득을 채택을 돕도록 승인한 것이다. 카르도수 대통령은 이 법에 호세 로베르토 마갈헤스 테이세이라(Jose Roberto Magalhaes Teixeira)라는 명칭을 부여했다. 작고한 캄피나스 시장에게 존경을 표시한다는 의미에서였다. 이후에 브라질 정부는 Bolsa Alimentacao(알리멘타카오)과 옥실리오-가스(Auxilio-Gas) 프로그램을 제도화했다. 2003년 룰라 노동당정부는 발레 알리멘타카(Vale Alimentaca) 프로그램을 제도화시켰다.

룰라 정부가 2003년 만든 입법한 Bolsa Familia(파밀리아) 제도는 기존의 Bolsa Escola(에스콜라), Bolsa Alimentacao(알리멘타카오), 카르타오 알리멘타카오(Cartao Alimentacao), 옥실리오-가스(Auxilio-Gas)를 통합시킨 것으로, 003년 12월 이 제도하에 3백5십만 가구가 등록했다. 2004년 12월에는 6백5십만 가구가, 2005년 12월에는 8백5십만, 2006년 12월에는 1천 1백만 가구가, 2009년 12월에는 1천2백5십만 가구가 등록했다.

여타의 경제정책 중에서 Bolsa Familia 제도는 브라질의 절대빈곤 및 불평등 감소에 기여해왔다. IPEA(Instituto de Pesquisa Economica Aplicada)의 연구에 따르면 가구 1인당 지니계수는 1995년 0.599였는데 2003년에는 0.581이어서 매년 감소했고, 2008년에는 0.544를 기록했다. 가구 1인당 소득이 93.75헤알 미만인 극빈선 아래 가계 비율은 2003년 17.5%였는데, 2008년 8.8%로 감소했다. 1인당 가구소득이 187.50 헤알 아래인 빈곤가구 비율도 2003년에는 39.4%였는데, 2008년에는 25.3%로 감소했다(number 30, PNAD 2008; First Analysis, 2009년 9월 24일).

이런 바람직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수치에서도 드러난다. 하위 20%의 가난한 가구 1인당 소득은 47%에 달할 만큼 급속히 증가했다. 2001년 20%의 가장 부유한 가구 평균소득은 하위 20% 가구에 비해 27배였다. 그러나 2008년에는 19배로 7년간 불평등은 30% 감소했다고 할 수 있다.

성과들이 진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브라질은 세계에서 여전히 불평등한 국가들 중 하나이다. 인구의 40%가 전체 국가 부의 10%로 살고 있으며, 부유한 10%는 40%이상의 국부를 차지하고 있다. 1% 부자들의 소득은 45% 최하위 소득과 같다. Bolsa 에콜라, Bolsa 알리멘타가 등에 이어 Bolsa Familia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확대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더 효율적으로 직접적으로 절대 빈곤 및 엄청난 불평등을 퇴치하고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시민 기본소득을 제안하는 대의다.

90년대에 들어 나는 BIEN을 창설해 매 2년 마다 대회에 참가하는 연구자들과 더욱 많은 교류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부정적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통한 소득보장, 즉 조건부형태보다는 모두에 대한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했다. 이런 이유로 2001년 12월 나는 브라질의회에 시민기본소득의 법제화를 위한 새로운 법안을 제출했다. 계획위원회의 지정리포터인 프란셀리노 페레이라(Francelino Pereira, PFL-MG)는 발의한 법안을 검토한 후 나에게 좋은 생각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러나 세출에 관련된 재정책임법(the Fiscal Responsibility Law)과 양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젠가는 모두에게 확대되어야겠지만 단계적으로 행정부(the Executive Power)의 기준이라서 Bolsa 에콜라나 당시의 Bolsa Familia 프로그램처럼 가장 빈곤층부터 시작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이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며 제임스 미드의 권유를 기억했고, 이에 동의했다. 덕분에 이 법

안은 2002년 12월 하원에서 모든 당의 합의로 승인되었다. 2004년 1월 안토니오 팔로치(Antonio Palocci) 재정장관은 룰라 대통령과 이야기 하면서 단계적으로 제도화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법이고 그래서 이를 승인해도 된다고 했다. 2004년 1월 8일 룰라 대통령은 10,835/2004호 법안을 승인했고 시민기본소득이 도입되었다. 이날 룰라 대통령은 경제학자인 셀소 푸르타도(Celso Furtado)로부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

대통령의 탁월함으로 시민기본소득법을 승인하는 이 순간 저는 이 법안을 통해 우리나라가 더욱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의 전위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합니다. 브라질은 마지막으로 노예제를 폐지한 국가로 자주 언급되곤 합니다. 이제 선한 시민들과 수플라이시 의원의 폭넓은 사회적 전망이 결합된 결과인 이 법안을 통해 브라질은 연대의 폭넓은 체계를 제도화하고 국민의 대표가 이를 승인한 첫 번째 국가로 언급될 것입니다.

이제 처음에 기본소득이 교육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캄피나스와 지스뜨리토 페데랄에서 시행됐던 것과 꼭 같은 방식으로 시민기본소득은 공동체 및 지자체에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또한 개발도상국 가운데서도 의미 있는 경험을 하는 곳이 나오기 시작했다. 나미비아 수도인 빈트후크에서 약 100킬로미터 떨어진 오토지베로-오미타라(Otjivero-Omitara) 마을 주민들은 2008년 1월부터 각각 약 미화 12달러에 해당하는 100나미비아 달러를 지급받았다. 이 계획은 나미비아 기본소득연대(the Coalition in Favor of Basic Income on Namibia)가 주도했다. 나미비아 기본소득연대에는 가장 열정적인 지지자 중의 한 사람인 제파니아 크미타(Zephania Kmeeta) 루터교 주교가 참여하고 있다. 그는 독일 노동조합으로부터 필요한 기금을 받는 등 여러 곳에서 자발적인 후원을 조직했다. 《슈피겔》지는 2009년 8월 “기본소득이 어떻게 나미비아 마을을 구했는가”라는 기사를 내보냈고, 《슈피겔》지는 이 경험에서 나온 많은 긍정적인 효과들에 대해서 강조했다. 경제활동은 증가했고, 많은 경제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절대 빈곤은 감소했다. 학생들의 취학비율이 높아졌고, 영양상태도 개선되었으며 주민들의 자존감도 높아졌다. 그의 선구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사회는 막대한 관심을 보냈다.

브라질에서는 세라 데 마르(Serra de MAR) 빌라 데 파라나피아카바(Vila de Paranapiacaba, Recivitas) 지역에서 인스티튜토 펠라 레비탈리자카오(Instituto pela Revitalizacao da Cidadania)가 1,200명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도서관 및 무료 장난감 센터를 만들어 주민들이 책과 장난감을 이용할 권리를 부여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시민기본소득 창설을 제안했다. 이 연구소의 브루나 아우구스토 페레이라 소장과 마르크스 브란카글리오네 도스 산토스(Marcis Brancaglione dos Santos) 코디네이터는 현재 이 마을이 속한 산토 안드레(Santo Andre) 시장이 시민기본소득을 시행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는 동안 이들은 모기 다스 크루제스(Mogi das Cruzes)에서 선구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009년부터 이곳에서 57명에서 매달 30혜알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또 다른 좋은 사례가 상파울로에서 177킬로미터 떨어진 세라 다 마티케이라(Serra da Matiqueira)의 산토 안토니오 도 핀할(Santo Antonio do Pinhal)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지역 지방의회는 9명의 의원의 합의로 2009년 10월 29일에 지역기본소득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노동당(PT) 출신의 호세 아우구스토 쿠아르니에리 페레이라(Jose Augusto Guarnieri Pereira)가 발의했다. 아우구스토 쿠아르니에리 페레이라는 2004년 55%의 지지로 의원에 당선되었으며 2008년 79.06%로 재선된 인물이다. 시장은 이 법을 2009년 11월 12일 승인했다. 5천564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시민기본소득을 법제화한 첫 번째 사례다. 법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산토 안토니오 도 핀할(Santo Antonio do Pinhal)에서 지속가능한 사회경제개발과 정의의 원칙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즉 모든 주민들 사이의 연대의 실천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주민들의 더 높은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산토 안토니오 도 핀할의 시민기본소득(CBI)은 제정되었다.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주민이나 5년 이상 거주한 거주민은 모든 주민들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매월 수당을 받게 된다.

연방법과 꼭 같이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이 각자의 최소한의 생존적 필요에 부합하도록 지자체의 개발수준 및 예산을 고려해 지급될 것이다. 주민들 중 가장 빈곤한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면서 콘셀호 무니시팔 데 RBC(the Conselho

Municipal de RBC)의 기준에 따라서 시민기본임금은 단계를 밟아 획득될 것이다.

또한 시민기본소득의 재정 마련을 위해 지자체 기금이 마련된다. 이 기금은 시의 세수입 중 6%와 개인 및 기업의 후원, 공공 및 민간, 국내외, 연방정부의 이전금, 가용 펀드 및 여타 자원의 투자로 벌어들인 이자 등으로 마련된다. 산토 안토니오도 핀할(Santo Antonio do Pinhal)에는 7천 3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절반이 시골 지역에, 나머지 절반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53개 임시임대숙소가 있고, 여기에서 1,200명이 머무를 수 있다. 32개의 식당과 중소규모 농장이 있고, 일부 상업 및 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좋은 학교가 있고, 살인사건이 한 건도 없는 등 낮은 범죄율을 기록하고 있다.

휴가를 즐기기 위해 이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숙소와 식당을 이용하면서 선구자적인 CBI의 성과 및 존 롤스의 《정의론》(1971)에 의해 만들어진 정의의 원칙에 열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된다. 필리페 판 빠레이스의 《모두에게 진정한 자유를》과 《무엇이 자본주의를 정당화하는가》(1995, 옥스퍼드)에 따르면 시민기본소득은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다.

1. 각 개인은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체계에 가장 부합하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확장된 형태의 제도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동등한 자유의 원칙).
2. 사회 경제적 이익의 불평등은 단지 (a) 이런 불평등이 사회 약자의 개선에 기여하는 한(차이의 원칙) 그리고 (b) 이 불평등이 모두가 기회의 평등을 누려야 한다는 입장과 연계되어 있을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동등한 기회의 원칙).

시민기본소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다. 만약 우리가 불사 파밀리아보다 아주 근소하게라도 더 나은 제도를 만들고자 한다면 적어도 이 계획에 따라 지급되는 가구당 95헤알 이상에서 시작해야만 한다. 3인 가족의 경우 95헤알이라면 1인당 32.50헤알이 주어진다. 따라서 우리가 40헤알을 가정한다면 6인가구의 경우 240헤알을 지급받는다. 12개월 동안 1인당 약 480헤알을 지급받게 된다. 만약 우리가 2010년을 기점으로 1억 9,200만 명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면, 921억 6,000만 헤알이 필요하고 이것은 GNP 2.6조 헤알의 3.5%에 해당하며 불사 파밀리아 예산의 8배에 달한다.

한 달에 40헤알은 상당히 작은 금액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점점 이 제도를 인정하게 되면 시민기본소득은 100헤알로, 언젠가는 1,000헤알로 점점 늘어가게 될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법안 82/1999호에 따라 브라질시민기금(Citizen's Brazil Fund)을 만드는 것이다. 법안 82/1999호는 내가 의회에 제안한 것이다. 이 법은 이미 하원에서 합의되어 하원에서 절차를 거치고 있고, 가족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미 승인이 된 바 있으며 하원 재정조세위원회의 시로 고메스(Ciro Gomes, PSB-CE) 의원의 서면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 이 기금은 천연자원의 채굴허가 및 양도에서 나온 이익의 50%, 정부소유의 토지(이는 모든 주민들에게 속해있는 것이다) 임대료의 50%, 공공사업 서비스 및 다른 자원을 통해 만들어진 이익의 50%로 구성되어 있다. 기금을 투자해서 나온 이익은 알래스카 영구기금과 마찬가지로 모든 브라질 주민들에게 시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특히 더 많은 사람들이 시민기본소득이 더 공정하고 문명화된 브라질을 건설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브라질 대통령, 주지사, 시장에게 좋은 제안이라고 말할 것이다. 지금 즉각 시민기본소득을 시행하자.

필리페 판 빠레이스 교수와 함께 한국기본소득네트워크의 국제회의에 초대받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판 빠레이스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의 대의를 널리 알리는 데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다. 나는 2007년 7월 나는 한국을 방문해 국회의원 및 외교통상부, 국립정치경제학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of Political Economics)를 방문한 바 있다. 당시 나는 한국에 대해 두 가지 제안을 한 바 있다. 나는 이것을 다시 한 번 되살리고 싶다. 남한과 북한의 화해와 통일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조치가 채택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남북 혼합 축구팀과 브라질 국가대표팀 간에 축구경기가 두 차례 개최될 수도 있을 것이다. 브라질 축구팀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축구팀이자 2002년 월드컵 우승팀이기도 하다. 한 번의 경기는 평양에서 또 다른 한 번은 서울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최고의 브라질 선수들은 브라질 대표팀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혼합팀 간의 게임이 있다면 참가할 의지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열릴 이 같은 행사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둘째, 남북한 각각 4천9백만, 2천3백만 국민들에게 무조건적 시민기본소득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나는 이 조치를 통해 세계 정의 및 평화의 대단히 훌륭한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